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성태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안수민 변호사

1. 개요	1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안원문 (의안번호:2205956)상 주요 변경사항	2
3. 개정안 시행에 따른 영향	4
4. 대응 방안	5

1. 개요

2024. 11. 28. 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4. 12. 19.자로 국회증언감정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이 법률로서 확정될 경우, 그 시행시기는 2025. 상반기경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공포된 것은 아니나, 법률개정으로 인해 기업인으로서 경영에 제약이 생기거나, 개인정보, 영업비밀의 유출 우려 등이 있

는 등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매우 큼니다.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안원문(의안번호:2205956) 상 주요 변경사항

가.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로부터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출석, 감정 요구 거부 금지 (개정안 제2조)

현행	개정안
<p>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u>이에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u></p>

나. 전자 송달 및 원격 출석(개정안 제5조 제7항 및 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요구서 중 서류등의 제출 요구서는 송달받을 자가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등의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에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p>
<p><신설></p>	<p>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⑩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p>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출석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은 그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선서 및 증언·감정·진술한 것으로 본다.

다. 동행명령 대상 범위를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개정안 제6조 제1항)

현행	개정안
<p>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p>	<p>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중요한 안건심사,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p>

라. 정보제출 방해시 벌칙규정의 신설(개정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p>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2.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3.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4.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5.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p>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p>	<p>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② 제5조제8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p>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송달기한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③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 제출 요구를 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시에도 위증 고발을 위한 절차 마련(개정안 제15조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고발)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의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3. 개정안 시행에 따른 영향

가. 개인정보가 담겨있거나 영업기밀 자료 제출의무의 발생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기업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라 하더라도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나 영업기밀 등 경영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나. 동행명령 발부가 가능함에 따른 출석의무 강화

기존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경우에 한하여 동행명령을 발부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중요한 안건 심사', '청문회'의 경우에도 동행명령을 발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안건 심사'의 경우 '중요한 안건'이 무엇인지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동행명령이 보다 빈번히 발부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 원격출석 가능에 따른 출석의무 강화

또한 원격출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출석을 회피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업가들이 수주나 회의 등의 이유로 출국을 하더라도 원격출석을 통해 증언을 해야합니다.

라. 정보제출방해자 처벌에 따른 정보제출 의무의 강화

현행 법률에 더하여 정보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바, 기업들의 정보제출의무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선불리 예단할 수는 없겠으나, 개정안 전반적으로 증인 출석, 자료 제출에 있어 그 의무가 강화되고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국회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준법경영, 윤리경영 등 내부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의 움직임과 동향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는 달리, 수시로 발생하는 중요한 안건 심사, 청문회의 경우에도 동행명령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기업가가 언제든지 출석하여 적절히 증언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진과 총수의 부재에도 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키울 필요도 큼니다.

개인정보, 영업기밀과 관련하여는 예기치 못한 유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 범위와 수위를 조절하고, 개인정보 및 영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정성태 대표변호사
형사, 민사, 민사일반/가사,
행정, 조세쟁송, 기업승계
E stjeong@draju.com
T 02-3016-5210



안수민 변호사
민사, 형사, IP, 행정,
교통/산재/의료/환경
E smahn@draju.com
T 02-3016-5295